

대학-기업 공동 R&BD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지침

<직접비 / 사용 가능 항목>

세목	구분	내용
연구시설·장비및재료비	사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약 및 재료의 구입·사용 경비, 시험 분석료, 전산처리·관리비 ○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 경비
	계상/ 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○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-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%를 산정하며,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○ 시약 및 재료·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○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,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○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,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○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(인건비, 재료비 등에 기 반영)하며,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,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○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사용료·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○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,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
연구활동비	사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 등 ○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 훈련비, 기술정보수집비,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,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, 창의활동비,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, 디자인 정보조사·개발 및 컨설팅 비용(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,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·품질컨설팅비 등 ○ 세부(단위)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○ SW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 구입비 산정가능(범용성 S/W는 제외) ○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○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등 ○ 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수행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주관기관이 편성하는 사업조정비 ○ R&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비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경비

계상/
산정
기준

- 인쇄, 복사, 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수수료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
 -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
 - 신문 광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
 - 위탁정산 수수료 및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
 -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-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
 -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, 수당,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
 -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(현금 계상에 한정)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로,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
- 국내외 훈련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
 - 학회·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·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,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
 -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
-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,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
 -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로,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
- 창의활동비
 -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정
-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
 -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,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
 -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·생산·영업·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 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,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
- 연구인력 활용비
 -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십, 멘토링 지원비,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
-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
-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·품질컨설팅비
 - 소프트웨어 품질검증,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,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
-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

○ <R&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가이드라인>

- 대학과 입주기업은 프로젝트 목적, 참여인력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.(프로젝트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)
- 협약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비용은 대학에서 일괄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업이 직접 관리(종료 후 정산) 할 수 있다.
- 프로젝트비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재료비, 시제품·시작품 제작비(단,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), 장비 임차비, 전문가활용비, 국내 교육훈련비, 인쇄 및 문헌구입비 등을 계상 할 수 있으며, 인건비,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계상 할 수 없다.(그 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집행·관리)
-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대학의 교수 및 대학 소속 연구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멘토링 수행 수당을 계상 할 수 있되 건당 최대 50만원을 넘지 못한다.(사업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지원받는 참여인력은 제외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연구수행전년(3책5공)의 적용 예외*를 둘 수 있음
 * 단, 프로젝트 참여는 참여교수 1인당 동시 1개 프로젝트 수행으로 제한(책임자,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) 필요

<간접비 / 사용 불가 항목>

사용 -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력지원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인력 인건비: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(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의 인건비 ○ 연구지원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 공통지원경비: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-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- 연구실 안전관리비 :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는 경비 - 연구보안관리비 :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- 연구윤리활동비 :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-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 -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 ○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
---------------	---

	<p>규정 제정·운영, 연구노트 교육·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</p>
<p>계상/산정 기준</p>	<p>○ 총 사업비(현금)의 5% 이내로 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(현물 제외)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